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(박성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46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13.

발 의 자 : 박성민 · 엄태영 · 박형수
유상범 · 윤영석 · 정동만
구자근 · 이인선 · 박덕흠
이종욱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고령층에 대한 건강검진은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국가건강검진과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노인건강진단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있음. 그런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검진 체계는 인지기능 저하와 낙상 위험 등 노년기 특화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음. 또한 현행 「노인복지법」상 건강진단 규정은 ‘실시할 수 있다’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노인 인구의 급증과 질병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노인건강진단에 관한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강화함으로써 노인 질환에 대한 예방 및 관리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(안 제27조제1항).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제1항 전단 중 “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5歲 이상의 者에 대하여 健康診斷과 保健敎育을 실시할 수 있다”를 “65세 이상 노인의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第27條(健康診斷 등)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<u>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5歲 이상의 者에 대하여 健康診斷과 保健敎育을 실시할 수 있다.</u>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별 다빈도질환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第27條(健康診斷 등) ① ----- -----<u>65세 이상</u> 노인의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보건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.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